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김영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규칙(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그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다.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오산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마.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한 교육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8월 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 명 :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김영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347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1일

발 의 의 원 : 김영희 의원

찬 성 의 원 :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규칙(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그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다.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오산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한 교육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
 - 「오산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전문(폐지 예정)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오산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둔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상황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자치법규 정비
5. 업무특성을 고려한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0억원 이상의 국·도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 투자 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오산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제4조에 해당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 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수정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시장은 정책실명제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자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업무추진 상황을 자체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1항의 점검·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제6조제1항 관련)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연락처)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명칭 기재	‘00.00.00	... ○○○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 내용	‘00.00.00	○○○ 과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업체 대표 ○○○	

※ 작성요령

- ① 정책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 ④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과 단위)을 기재
 - ⑤ 담당자 : 현재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⑥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시정현안 / 50억 이상 보조사업 / 10억 이상 자체사업 / 연구용역 / 자치법규 등 개폐 / 기타)
 -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 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전에 진행한 주요 추진사항 기재.
최종 결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항부터, 결재선 직급 순으로 실명 기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제6조제2항 관련)

①등록번호	②정책명	③사업부서	④담당자

※ 작성요령

-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0-1, 2020-2)
-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첨】

관계법령 발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포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 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오산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

제17조(성과평가위원회) 시장은 성과관리 평가 및 우수부서 선정과 성과우수자의 성과시상금 지급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오산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성과우수자의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오산시 정책실명제 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오산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과정의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
2. 국·도비 예산이 투입되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3. 5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
4. 그 밖의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오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책실명제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관리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 오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오산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오산시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8조(정책실명제의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정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③ 총괄부서는 매년 1회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업무추진상황을 자체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9조(정책실명제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